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시행 2016.3.29]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29호, 2016.3.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0조에 따라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2.]

제2조(학위의 종류 및 종별) ① 학위의 종류는 학사학위 · 석사학위 · 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의 4종류로 하며, 그 종별과 해당학과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는 전공과 학위논문의 성격에 따라 소정의 자격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학과(부) 학위와 다른 종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공동학위 수여) 「학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각 학위과정별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7.12.]

제4조(학위논문의 구분) 학위논문은 학사학위논문 ·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으로 구분한다.

제5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① 학사과정의 지도교수 선정 시기는 졸업학년 초 3개월 이내에 한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석사 · 박사통합과정 포함)의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선정 후 1개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 학기를 경과한 후에라도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학생 1명당 교원 1명으로 한다.

⑤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 · 전공의 교원이어야 한다.

⑥ 학과(부)장은 학생의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12.26.]

⑦ 논문지도교수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6조(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①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명 이내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1. 학제적 성격의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
3. 그 밖에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 또는 국내외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이나 기관의 교원으로 한다.

③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논문작성계획서) 각 대학(원)장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석사·박사통합과정 포함) 학생에게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학위논문 제출자격)① 학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정이수학점을 해당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소속 대학장이 별도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2.7.12.]

②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 제78조제3항(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은「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과정이수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2.7.12.]

제9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②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과정에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교과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박사통합과정생의 응시자격은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EFL 성적으로 대체하며,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외국어시험(영어과목 제외) 및 종합시험의 과목별 합격점수는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박사과정(석사·박사통합과정 포함)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외국어(영어 제외)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원 입학고사에서의 외국어시험 성적이 제4항의 각 학위과정별 합격점수 이상인 경우
2.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을 이수하여 "C- 이상" 또는 "S"성적을 취득한 경우
3.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어어학능력시험 성적이 각 대학(원)장이 정한 합격기준 이상인 경우

⑥ 외국인 학생 또는 대학원 입학고사에서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은 학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⑦ 치의학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의학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시험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그 밖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험과목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0조(학위논문의 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은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논문의 표지형식은 별지양식 1과 같고, 학사학위논문의 표지형식은 각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학위논문제출횟수 및 허용기간) ① 학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 · 출산 기간(1회당 2년)은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석사 · 박사통합과정 포함)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학사학위

제12조(학사학위수여) ① 학사학위는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논문심사 또는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수여하며, 별지 제1호(영문 제1호의4) 서식의 졸업증서를 준다. 다만, 복수전공 또는 연합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1호의2(영문 제1호의5) 서식의 졸업증서를 주고, 부전공, 연계전공 또는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1호의3(영문 제1호의6) 서식의 졸업증서를 준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졸업논문 또는 실적심사를 졸업종합시험 또는 실기발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각 대학별 졸업논문 대체 시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학위논문의 제출) 학사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4조(논문심사위원) 학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2명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장이 정한다.

제15조(논문심사평가 방법) 논문심사 평가방법 및 기준은 각 대학장이 따로 정하며, 평가결과는 합격(S) 또는 불합격(U)으로 한다.

제16조(학위논문의 대체시행 방법) ① 제12조제2항의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및 실적심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및 실적심사 평가결과는 합격(S) 또는 불합격(U)으로 하며, 실기발표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석사학위

제17조(석사학위 수여) ① 석사학위는 제8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논문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하여 심사위원의 최종인준을 받은 논문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학생에게 수여하며, 별지 제2호(영문 제2호의3) 서식의 학위기를 준다. 다만, 주관 대학(원)장이 없는 협동과정의 소속 학생에게는 별지 제2호의2(영문 제2호의4) 서식의 학위기를 준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치의학대학원 · 경영전문대학원 · 의학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학위논문을 실적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5(영문 제2호의 6) 서식의 학위기를 준다. [개정 2012.7.12.]

③ 제2항의 실적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되, 이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학위논문의 제출) 석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심사용 논문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또는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각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20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구술고사는 논문의 최종 심사와 함께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논문심사결과를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소속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박사학위

제21조(박사학위 수여) 박사학위는 제8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논문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하여 심사위원의 최종인준을 받은 논문을 학(원)장에게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며, 별지 제3호(영문 제3호의3) 서식의 학위기를 준다. 다만, 주관 대학(원)장이 없는 협동과정의 소속 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의2(영문 제3호의4) 서식의 학위기를 준다.

제22조(학위논문의 제출) 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 요구서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3. 이력서
4. 그 밖에 각 대학(원)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23조(논문편수) 박사학위 논문은 1편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위원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참고논문 또는 부본 · 역본 · 모형 및 표본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구성) ①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또는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25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구술고사는 최종 심사와 함께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논문심사 결과를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소속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논문심사 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학위수여의 결정) 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7조(학위논문의 공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은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학위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5장 명예박사학위

제28조(수여대상)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29조(수여방법) ①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수여하며, 별지서식 3의 학위기를 준다.

② 그 밖의 명예박사학위 후보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위의 취소

제30조(학사학위의 취소)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의 취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2029호,2016.3.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학위의 종류 및 종별 표」중 연합전공 벤처경영학의 경영학사(전공명칭)는 2016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